

춘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36234 판결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36234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11. 22 선고 2022가단15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변론 종결 2024. 8. 29.

판결 선고 2024. 10. 10.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11. 22. 선고 2022가단1577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명도하고, 21,6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22. 10. 21.부터 이 사건 상가 명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배성준

판사허경은

별지